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년 1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제정이유

○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와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적 전통을 선양하고 널리 알려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성주참외축제의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성주참외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(안 제2조, 제3조, 제6조)

1) 인원 : 20명 내외(당연직 5, 위촉직 15)

2) 임기 : 2년(연임 가능)

3) 대상 : 문화예술전문가 및 사회봉사단체 대표, 관광, 예술 등
축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등

4) 기능 :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참외축제 추진계획 심의·확정 등

나. 성주참외축제 사무국 설치(안 제5조)

1) 인 원 : 2명(사무국장 1, 직원 1)

2) 기 능

- 성주참외축제 세부추진계획 수립
- 예산의 집행 및 결산
- 그 밖의 축제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

다. 성주참외축제의 평가 및 결산(안 제 19조)

- 평가 및 결산 : 축제행사 종료 후 60일 이내

라. 성주참외축제행사 지원(안 제 20조)

- 축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조사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 지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 없음.

다. 기타

1) 제정 조례안 : 붙임

2) 신・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3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 참외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성주군 참외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성주군 참외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성주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서 개최하는 성주참외축(이하 “축제”라 한다)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참외축제 추진위원회(이하 “추진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
2. 축제 추진계획의 심의 및 의결
3. 축제에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
4. 그 밖에 축제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추진위원장”이라 한다)과 부위원장, 감사는 추진위원회 위원(이하 “추진위원”이라 한다)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제1항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, 기획감사실장, 친환경농정과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축제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군의회 의원
2. 관광, 문화, 예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문화예술전문가 및 사회 봉사단체 대표
4. 농민단체 등 그밖에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

④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장은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
⑤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(실무추진단) ① 제3조 제4항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추진단은 행사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담당자로 구성 운영한다.

② 실무추진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세부추진 사항의 협의 및 추진
2. 행사진행을 위한 프로그램 조정, 홍보, 행사장 시설, 인력관리 등 종합적인 검토 및 협의
3. 기타 성공적인 축제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업무의 수행

③ 실무추진단은 축제행사 종료와 동시 자동 해체된다.

제5조(사무국) ① 제3조 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두며 추진 위원 또는 민간인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②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③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세부집행 계획수립
2. 예산의 집행 및 결산
3. 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 기록
4. 그 밖에 축제추진에 필요한 사항

④ 추진위원회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
제6조(추진위원의 임기) ①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 및 군 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기관, 단체의 현직위로 인해 위촉된 추진위원은 해당직위를 면할 경우 후임자가 승계한다.

제7조(추진위원장의 직무) ① 추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.

1.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집행
2.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
3.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등

② 부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며 추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재정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제행사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추진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
2.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
3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

제9조(위원의 권리와 의무) ① 추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회의참석 및 발언권
2. 안건에 관한 의결권
3. 그밖에 추진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

② 추진위원은 본 위원회로 인하여 취득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발언권 및 의결권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10조(회의) ① 추진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, 추진위원장은 의장이 된다.

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안건의 심의 및 제출) 위원장은 축제개최 60일 전까지 행사 계획 등 축제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13조(수입) ① 추진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
2. 공공단체의 지원금
3.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지정기탁금
4. 입장료 등 수익 사업에 의한 수익금
5. 기타 수입금

② 수입금은 추진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축제예산 중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.

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예산의 집행) ① 수입과 지출은 수입,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에 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및 군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(지출원) ①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원을 두되, 지출원은 축제담당과장으로 하되, 사무국 설치 시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.
② 지출원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축제사무의 위탁)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획,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18조(외부전문가 고용 등) 축제의 기획 및 전문적인 운영지도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외부의 전문가를 유급으로 고용 상시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19조(축제의 평가 및 결산) 추진위원장은 군수에게 매년축제 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의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0조(행사지원경비) 군수는 축제와 관련된 연구 용역 조사나 그밖에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